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249호
- 다. 발의일자 : 2018. 10. 18
- 라. 회부일자 : 2018. 12. 28

2. 제 안 사 유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위원회 수당 등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 제6조제2항제4호)

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대행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신설 안 제10조제3항)

다.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며, 위원회 수당 등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등¹⁾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을 대행²⁾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이 실효성 있게 작성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³⁾의 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하 생략)

2)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이하 생략)

3)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16.1.21 시행)된 바 있으며, 발주청(공공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제3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을 준용하여 동 조례에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 각 호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까지 포함되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발주청 외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 한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및 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생략)</p> <p>③ <u>제1항에</u>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u>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u> _____ _____ _____.</p> <p>④ <u>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u></p>

2)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 등

-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상위법령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 일부가 제284회 정례회 중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 이미 반영⁴⁾되어 있으며, ‘해촉(解屬)’의 경우 종전에는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 또한 용어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해촉을 사용하고 있어 ‘해촉’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함⁵⁾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4) 제283회 임시회 휴회 중 제206호(시장제출)은 '18년 10월 17일, 동 조례안 제249호는 10월 18일 제출되었음. 제284회 정례회 의안 제출 기한이 10월 17일까지인 바, 제206호만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처리되었음(「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8판)」('17년 12월)

[참고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67조의4(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발주청에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여 해당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7조의5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5(협회의 협조)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
2.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3.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